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가스시설을 시공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일부 무등록업체에서 도급 받아 시공하거나 이를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도급 받아 무등록업자에게 시공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동법 제9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1조 제5호 및 제9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한 자는 건설업 등록말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는 상기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향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추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